

##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 [고용보험환급과정] 안내

문서번호 : 당상관 제 호(2018.2.27)

수 신 : 기업체 대표이사 귀하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귀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본 회의소에서는 「제조업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유치하여 회원 업체 직무능력 향상 및 관리감독자 법정 의무교육 이수 혜택을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바라며, 2016년 3월부터 개최되는 고용보험 환급과정에 QR코드인식 출결관리시스템 적용이 의무화 되었으니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제출서류(교육훈련 위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작성하시어 팩스(031-480-8506)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18. 3. 20(화) ~ 21(수), 09:00 ~ 18:00(16시간)  
나. 장 소 : 당진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  
다. 교육기관 : (사)한국안전기술협회  
라. 교육내용 : 당진상공회의소 홈페이지 행사/교육란에 세부교육내용 참고  
마. 교육대상 : 사업장 관리감독자 및 위험성 평가 담당자(선착순 40명)  
바. 수 강 료

- 회원업체 126,220원 - 비회원업체 160,000원

※ 환급금액 : 최대 126,220원 (환급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수 있음)

※ 교육비 환급은 80%이상 참석 시 가능 / 중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사. 교육비 입금계좌 : 농협 301-0130-2624-61(예금주 : (사)한국안전기술협회)

※ 교육 전 날까지 반드시 입금必, 교육 당일 환불 절대불가, 계산서 협회에서 발행

아. 준 비 물 :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노트북(참석자 본인 2일차 교육시 지참)

자. 교육이수 시 혜택

-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점수반영(평가항목 중 교육 이수시 점수 반영)

- 산안법 제31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법정교육(16H) 수료 인정

- 위험성평가 실시후 인정시 3년간 산재보험료 20%인하

(50명 미만 제조업만 산재예방요율 적용)

차. 문 의 : 당진상공회의소 사업팀 ☎ 041-357-2500

한국안전기술협회 교육팀 ☎ 031-480-8504

카. 기 타 : 제출서류는 당진상공회의소 홈페이지 행사/교육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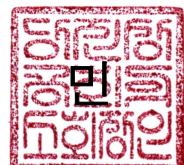
타. 신청방법 : '교육훈련위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팩스(031-480-8506) 송부 신청 후  
접수 확인 전화(031-480-8504)요망 (40명 접수순 마감)

★ 입금시 '회사명' 필히 기재 바람

★ 교육 참석 전 <http://www.hrd.go.kr> 사이트 개인회원가입 필요

첨부 :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끝.

당진상공회의소 회장 이 영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환급과정)

### <(환급과정 필수사항)QR코드인식 출결관리시스템 사용법>

- 정부 정책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고용보험 환급과정 교육 시 QR코드인식 출결관리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교육 전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 준비**해시길 부탁드립니다. (비환급자는 확인 후 출석부 서명으로 갈음)
- ① **PC에서** 직업능력지식포털(<http://www.hrd.go.kr>) **사이트 개인회원가입**(휴대폰인증 등 필요)
- ②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고용노동부 HRD-NET 훈련생 출결관리’** 어플 설치

**◆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낮추기 위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체계화된 산재예방활동을 말합니다.

**①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점수로 심사하여,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kras.kosha.or.kr> 참조

**② 대상 사업장은?** :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공단에 인정 신청한 사업장

**③ 우수사업 인정절차는?** : 교육(사업주/평가담당자) → 위험성평가실시 → 인정신청 → 현장심사 → 인정결정 → 인정  
 ◆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위험성평가 사업담당자 ☎ (041-570-3423)

**④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을 경우, 혜택은?**  
 ○ 산재보험료 20% 감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에 한함)  
 ○ 인정 유효기간(3년) 동안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정기감독을 유예  
 ○ 평가담당자 교육(제조건설16H)이수 시, 해당시간만큼 산업법 제31조 관리감독자교육으로 인정(대체)  
 ○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또는 융자금 우선지원,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⑤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일정표 (09:00~18:00, 이틀과정, 16H)**

구분	과 목	세부내용	교육시간
<b>【1일차】</b>			
1	○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일반)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 - 산재발생시 조치사항 -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보건사항 -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3시간
2	○ 위험성평가 제도개요(전문)	- 제도도입 배경 및 제도개요 - 사업장 위험성 평가방법 및 절차 - 위험성평가 인정심사기준 등	2시간
3	○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전문)	- 위험성평가의 개요 및 단계별 세부절차 -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방법 등	3시간
※ 50인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지킴이 역할, 활동내역 입력 및 정보교류 등 추가 안내			
<b>【2일차】</b>			
4	○ 업종별 위험성평가 실습 I(전문)	- 위험성평가 실시기법 - 지원시스템 활용방법 등	4시간
5	○ 업종별 위험성평가 실습 II(전문)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및 처리절차 등	4시간

**⑥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환급금액 기준표**

교육 과정	교육 시간	교육비	고용보험 환급액	환급율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16시간	- 회비납부업체 : 126,220 - 회비미납업체 : 160,000	최대 126,220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환급액 중 100% 환급 - 1,000인 미만(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환급액 중 60% 환급 - 1,000인 이상: 환급액 중 50% 환급

##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 지원신청서

사업장명		고용보험관리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교육참석자 (업무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 -
		(휴대폰)	- -
소재지	( - )		
소분류업종		근로자수	명
<p>사업장이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평가담당자교육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사)한국안전기술협회장 귀하</p>			

<수강료 및 수강료납부계좌>


수강료	입금여부	납부계좌
₩160,000/人	여 / 부	농협 301-0130-2624-61 예금주: (사)한국안전기술협회

## 교육훈련 위탁계약서(신청서)

재직사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_\_\_\_\_(이하“갑”이라 한다)와 “한국안전기술협회”(이하“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내용 및 훈련참가자	가. 계약내용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인원	1인당훈련비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16시간	명	원	
		나. 훈련참가자					
		위탁 기관	회사명 (법인명)	대표자	소속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주소				
			업태	종목	상시근로자 수		
			전화번호		팩스번호		
			계산서 e-mail	교육비 환급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다. 훈련생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서	직위	핸드폰번호			
제2조	신의 및 성실의무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이거 위 훈련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나. “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교육 훈련을 성실히 실시하고 훈련수료기준에 부합한 훈련생에 대하여 교육 실시 확인서를 발급한다. 수료기준은 출석률 100%이다.(법정 교육 이수 시간 준수)					
		다. “을”은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내용과 지정 시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의 장에게 제출한 훈련실시계획서에 따라 훈련을 성실히 실시하여야 하며,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을”의 귀책사유로 관할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의해 당해 훈련과정이 취소되어 “갑”이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을”이 책임을 진다. (단, 이는 “갑”이 훈련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때에 한하며, “갑”의 무단이탈 등에 따른 교육 미이수 시엔 이를 적용치 아니한다.)					
		라. 부득이한 이유로 교육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교육개시 3일전까지 연기 의사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없이 훈련 불참 및 훈련입소 후 중도퇴소 시 훈련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마. “갑”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 및 교육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며, “을”은 제공받은 정보를 본 교육과 관련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수집된 개인정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2(등록기관의 평가)에 따른 교육기관 평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공기관에 제3자 제공됨.							
		제공 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성명, 교육수료기관, 연령대, 소속회사정보(지역, 업종, 규모), 직위, 전화번호(휴대 및 사무실)	교육기관 평가를 위한 만족도 조사에 활용	만족도 조사 및 결과 처리 즉시 폐기		
제3조	해석 및 합의	가. 본 계약서 상의 조문 해석과 관련하여 쌍방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					
		나.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기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b>갑)</b>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직인)	<b>을)</b> 회사명 : 사단법인 한국안전기술협회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76, 타원타크래프 9층 대표자 : 우 종 현 (직인) <div style="text-align: right;">  </div>
---	--